[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공고] : 제 2026-023호

2026년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입찰 공고

"COMPA의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"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6일

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

1. 입찰개요

○ 입찰명 : COMPA 통합업무관리시스템(MIS) 고도화 용역

○ 사업기간 : 계약체결일~2026년 12월

○ 사업예산 : 금89,500,000원 이내(VAT 포함)

○ 제안서 공고 및 접수마감

- 사전규격 공개 : 2026. 5. 19.(화) ~ 5. 24.(일)
- 공고기간 : 2026. 5. 26.(화) ~ 6. 5.(금)
- 접수마감 : 2026. 6. 5.(금) 16시까지

○ 제안서 제출 방법 : 제출서류 전자(이메일) 접수

○ 접수처 :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(jhjung@compa.re.kr)

○ 문의처

- 사업관련 : 경영혁신팀 임경수 행정원 (02-6347-5416)
- 접수관련 :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행정원 (02-6347-5414)

○ 기타 사항 :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2. 입찰참가 신청서류

○ 서류별 제출방법 및 기한은 제안요청서(RFP) 참조

3. 사업자 선정방법

○ 입찰방법 : 제한경쟁입찰

○ 계약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4. 입찰참가 자격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

○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

○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(분야 :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)로 등록한 업체

※ 제안 업체는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제58조(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)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(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))에 따라야 함.

※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「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중소기업,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

○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*를 소지한 자

*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(8111159901),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(8111189901),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(8111219901),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(8111229901),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(8111179901)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

※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

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

-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
-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, 「소프트웨어진흥법」 제48조 제2항 및 「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)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5. 기타사항

○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(인지세 등)은 제안사가 부담함

○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. 이때 제안사(수행책임자)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

○ 사업결과 산출물의 소유권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있음

○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, 입찰 참가 제외, 낙찰 취소, 계약해지 등을 조치함

○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해 재입찰 또는 재공입찰을 진행할 수 있음

○ 제안안내서, 제안요청서,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

○ 관계법령 등의 숙지(근거 :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)
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,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